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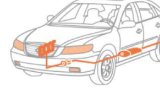



## 자동차 기능 종합 진단서

검사일자:       년       월       일

자동차등록번호	소유자 명	차 명	
차 대 번 호	원동기형식	최초등록일	
다음 종합검사일 <sup>1)</sup>	재검사 기간 <sup>2)</sup>	주행거리	km

1) 다음 검사는 위의 다음 종합검사일 기준 전 90일 이내, 후 31일 이내에 받아야 합니다.  
 2) 재검사 대상 자동차는 위의 재검사 기간 내에 재검사를 받아야 하며, 재검사 기간 경과 시 자동차검사 미수검 과태료와 검사 재신청 수수료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.

진단항목		안전진단기준(검사기준)		진단결과	진단의견	검사원	
조향계통 	앞바퀴 정렬	옆방향 미끄러짐 정도 (1m 주행에 5mm 이내)					
	조향계통 설치상태 등	변형·느슨함·누유여부 파워스티어링 오일량					
주행계통 	차축·타이어·휠	외관 손상·변형·돌출여부 타이어 상태					
	변속기 추진축 등	변속기 오일 오염도(진단이 가능한 경우로 한정함) 추진축·등속조인트(손상·변형) 클러치 유격상태					
뒷바퀴 정렬(옆 방향 미끄러짐)							
제동계통 (브레이크 시스템) 	앞축	전	앞축무게( kg)의 50% 이상	% (측정값: kg)			
		후	앞축무게( kg)의 50% 이상				
	뒷축	전	뒷축무게( kg)의 20% 이상	% (측정값: kg)			
		중	뒷축무게( kg)의 20% 이상				
		후	뒷축무게( kg)의 20% 이상				
	전체브레이크	전체무게( kg)의 50% 이상		% (측정값: kg)			
		주차브레이크		전체무게( kg)의 20% 이상	% (측정값: kg)		
	좌·우 차이 (편차)	앞축	전	앞축무게( kg)의 8% 이하	%( : kg)		
			후	앞축무게( kg)의 8% 이하	%( : kg)		
		뒷축	전	뒷축무게( kg)의 8% 이하	%( : kg)		
후			뒷축무게( kg)의 8% 이하	%( : kg)			
제동계통 설치상태 등		견고한 설치·손상·오일누출 배력(booster)장치의 작동상태					
		디스크·패드상태					
등화장치 	전조등	광도	좌/우	3,000cd 이상		좌측밝기: cd 우측밝기: cd	
		진폭	좌	설치높이 ≤ 1.0m	-0.5% ~ -2.5%	높이: m 진폭: %	
	우		설치높이 > 1.0m	-1.0% ~ -3.0%	높이: m 진폭: %		
	기타등화		등화장치 점등 및 설치상태 등				
배출가스 	휘발유 LPG	검사방법					
		일산화탄소(CO)					
		탄화수소(HC)					
		질소산화물(NOx)					
	공기과잉률(λ)						
	경유	검사방법					
		매연					
질소산화물(NOx)							
배기, 소음 발생방지장치		배기관·소음기·촉매장치의 손상, 변형 등이 없을 것					
계기계통 	속도계		40km/h일 때(32 ~ 44.4km/h)				
	계기장치		운행기록계·최고속제한장치 설치 및 작동여부				

\* 진단항목 중 배출가스 질소산화물(NOx) 측정값은 종합검사 시에만 입력할 것

진단항목			고장코드		
자기진단 센서 점검	배터리 상태	안전점검	고전압 부품 절연		진단의견
			배터리 셀 간 전압편차		
			배터리 모듈 온도		
	성능점검	총 동작시간			
		누적 총 · 방전량			
		배터리 충전량(SOC)			
		배터리 열화상태(SOH)			
		급속 충전 횟수			
검사항목			결과 및 의견		
관능(육안)검사	엔진오일 오염도 / 벨트상태 원동기 이상음 / 시동장치 / 방열기				
	동일성 / 차대 및 차체 / 물품적재장치				
	(승차 / 조종 / 완충 / 방화)장치				
	경음기 / (연결 및 견인 / 전기)장치				
	연료장치 / 내압용기 / 시야확보 / 창유리				
	기타장치				
서비스 제공					
종합 진단결과		<종합의견>  <부적합 내용>  <시정권고 내용>			

「자동차관리법」 제43조제2항, 같은 법 시행규칙 제80조제3항 및 「자동차종합검사의 시행 등에 관한 규칙」 제5조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이 발급합니다.

년    월    일

자동차검사소 검사책임자 인

※ 본 진단서는 고객님의 차량 관리를 위한 진단결과입니다.